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46호

제출연월일 : 2004. 3 . 11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 안 이 유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군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으로 함(안 제3조).

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및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 등이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함(안 제6조).

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함(안 제9조).

3. 참 고 사 항

○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 경상남도 사회65140-11166(2003.4.28)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 예고(2004. 1. 9 ~ 2004. 1. 2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4. 본 문 : 붙 임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계약"이라한다)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의 가족(이하"장애인등"이라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의회, 군 소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군수"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고성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때 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인등급 3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 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조하여 보상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구분 / 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모.부자 가정	65세 이상 노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등급 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제4조1호 가호 또는 나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1호 다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이상 70세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비과세 대상자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1호 라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비과세 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세대주와의 관계	
		한 자			
	주 민 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주 소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영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신청사유	□ 장애인 □ 노인 □ 모자가정			
신청 대상	□20세이상 장애인 □모.부자가정의 가족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비대상	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비대상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천원)	비고

고성군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	없 음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 계 법 령

(障碍人福祉法)

第2條 (障碍人의 定義) ①障碍人은 신체적·정신적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

②이 法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障碍를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신체적 障碍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障碍, 내부기관의 障碍등을 말한다.

2. 정신적 障碍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障碍를 말한다.

第38條 (生業支援)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障碍人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財政經濟部長官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障碍人이 담배事業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障碍人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③障碍人이 郵便法令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障碍人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碍人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第9條 (敬老年金 지급대상)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에게 敬老年金(이하 "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9.2.8>

1. 65歲 이상의 國民 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

2. 第1號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로서 1998年 7月 1日 현재 住民登錄法상 65歲 이상이고 本人 및 그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扶養義務者(生活保護法상의 扶養義務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所得을 합산한 금액이 家計所得 및 家口員數 등을 기준으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財産을 합산한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者

②國民年金法·公務員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에 의한 年金支給對象者는 이 法에 의한 年金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0.1.12>

第25條 (生業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置참 운영하는 公共施設안에 食料品참事務用品참新聞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賣店이나 自動販賣機의 設置를 許可 또는 委託할 때에는 65歲 이상의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모자복지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第15條 (公共施設內 賣店 및 施設設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 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許可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모·부의 범위 <개정 2003.7.9>)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